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	2
III.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4
① 노동가치·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4
②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6
③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7
IV. 향후 계획	8

1. 추진배경

1. 추진배경

-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 존재, 부처·자치단체간 처우 격차 상당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침해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및 노동자·국민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
 -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여 민간으로 확산 필요

▲ <대통령 지시사항>

- ① 보수를 단계적으로 정규직 수준까지 인상, ②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도입, ③ 수익 위주의 평가 방식 개선

2. 추진경과

- **(추진체계)**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TF*」 운영('25.12~), 노동부 내 전문가 자문단 운영('26.1.12. 발족)
 - * (구성) 노동부·재경부·기획처·교육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대상 조사 실시(2.6.~3.20.) 및 분석
 - * 협조 공문 발송(3회), 설명회 개최, 조사표 작성방법 동영상 제작·배포 등 독려 → 95% 조사 완료 (중앙부처 98.1%, 공공기관 98.0%, 자회사 92.2%, 지자체 85.6%, 지방공기업 88.6%)
- **(공무직위원회)**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3.17, 시행 9.18.)
 - * (출범준비) 「노동·전 사전협의체」 발족(3.31.), 다양한 요구사항과 논의의제 사전 조율 중
 - ↳ 위원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위원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
- **(지도·감독)** 공공부문 불공정한 고용관행 근절 지도공문(3.9.) 시달 및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 기획감독 실시(3.11.~)
 - 공공부문 불공정 고용관행에 대한 익명 제보센터 개소(3.16.) → 온라인 상담센터로 확대 개편(4.6.)

II.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

〈조사 개요〉

- ▶ (대상·기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 '26.2.6.~3.20.
* 교육기관(시·도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소속 교육공무원 대상)은 교육부 조사 실시('25.4.1 기준)
- ▶ (내용) '25.12.31. 기준 소속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계약, 근로시간, 직종, 임금 항목별 급여, 상여금, 금전적 복리후생 등 (응답률 95%)

1. 규모

- 기간제 노동자는 총 146천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고(47.6%), 교육기관(19.4%)·공공기관(16.8%)·지방공기업(7.7%)·중앙행정기관(6.1%), 자회사(2.4%) 순으로 나타남
- 기간제 노동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0%이며, 지방자치단체가 64.1%로 가장 높음

〈소속기관별 기간제 노동자 수〉

(단위: 천명, %)

	전체	중앙행정 기관	공공 기관	자회사	지방 공기업	지방 자치단체	교육 기관
기간제	146.4 (100.0)	9.0 (6.1)	24.6 (16.8)	3.5 (2.4)	11.2 (7.7)	69.7 (47.6)	28.4 (19.4)
1년 미만	73.2 (50.0)	3.1 (34.4)	10.0 (40.6)	1.8 (51.4)	5.2 (46.4)	44.7 (64.1)	8.4 (29.6)

* 기간제·대학 교원 및 초단시간 노동자 제외

2. 계약 기간

- 1년 미만 노동자 중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노동자가 36.1%,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가 33.4%로 대다수를 차지함
- 특히,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의 비율도 15.7%로 상당

〈소속기관별 계약 기간(비율)〉

(단위: 명, %)

	전체	중앙행정 기관	공공 기관	자회사	지방 공기업	지방 자치단체	교육 기관
3개월미만	8,407(11.5)	312(10.2)	1,659(16.5)	54(3.0)	442(8.4)	5,130(11.5)	810(9.7)
3 ^{이상} -6개월미만	13,907(19.0)	1,258(41.2)	2,420(24.1)	313(17.4)	1,058(20.2)	6,852(15.3)	2,006(24.0)
6 ^{이상} -9개월미만	26,410(36.1)	704(23.0)	3,240(32.3)	1,131(62.9)	1,543(29.4)	17,492(39.1)	2,300(27.5)
9 ^{이상} -12개월미만	24,482(33.4)	782(25.6)	2,717(27.1)	299(16.6)	2,201(42.0)	15,234(34.1)	3,249(38.8)
11 ^{이상} -12개월미만	11,498(15.7)	194(6.3)	1,136(11.3)	62(3.5)	809(15.4)	7,250(16.2)	2,047(24.5)
소계	73,206(100)	3,056(100)	10,036(100)	1,797(100)	5,244(100)	44,708(100)	8,365(100)

2. 임금

- **(평균)** 기간제 노동자의 월 정액임금*은 평균 289만원이며, 1년 미만은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

*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고려, 기본급, 제수당,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소속기관별 기간제 노동자 월 정액임금>

(단위: 만원)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전체
기간제	264	357	265	254	275	243	289
1년미만	240	307	244	245	286	241	280

* 교육기관은 방학 특수성으로 비월정수당의 비중이 큰 임금체계라는 점 고려 필요

- **(직종)** 동일한 직종이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 발생

<직종별, 소속기관별 기간제 노동자 월 정액임금>

(단위: 만원)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사무(보조)원	284	236	284	315	265	290
시설물청소원(건물)	241	233	237	250	241	239
환경미화원	268	251	316	336	249	245
시설관리	264	240	223	269	253	290
경비원	258	256	241	280	268	237
급식·조리원	244	238	260	235	251	242

* 교육기관은 직종차이로 분석에서 제외

- **(수당)**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공무직) 대비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Ⅲ.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1. 노동가치·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 **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 등으로 공공부문의 적정 보수체계 마련

①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 (’27년)

○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공정수당 도입,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정부예산안 반영)

- 기준금액(254.5만원)* 대비 1-6개월은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하여 10~9% 차등,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로 총 6단계 정액 수당 체계 마련

* '26년 기준 최저임금 대비 118% 적용

↳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 단기계약 시 높은 보상지급률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장기 계약 유도

* 단,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2개월 구간의 공정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초단시간의 경우 구간별 공정수당을 시간비례로 지급

<'27년 공정수당 지급표>

근무기간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보상지급률	10%	9.5%	9%	8.5%	8.5%	8.5%
공정수당	382천원	846천원	1,260천원	1,622천원	2,055천원	2,488천원

※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이전 공공부문이 이에 준하는 수당 형식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이며,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

■ **참고: 경기도 공정수당** ('26년 경기도 생활임금: 月 262만 3,368원, 최저임금의 121%)

- (대상·예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300명, 30억 9500만원('26년)
- (방식) 계약만료시 기본급(생활임금)의 5~10% 차등지급

근무기간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보상지급률	10%	9%	8%	7%	6%	5%
'26 공정수당	401천원	842천원	1,177천원	1,404천원	1,525천원	1,537천원

■ 참고: 생활임금

- (시행근거) 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 또는 단체협약
 - ※ 부천시가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13.12월) / '26.2월 현재, 132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 (적용대상) 지자체 공무원·기간제,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등
- (최저임금과 차이)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는 법적 하한선,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지자체별로 자율 책정
 - * '26년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서울시: 최저임금의 117.4%, ▶경기도: 최저임금의 121.6%, ▶인천시: 최저임금의 116.4%, ▶광주시: 최저임금의 128.9%, ▶대구: 최저임금의 116.4% 등

② 공공부문 적정임금 예산 반영 ('27년)

-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공부문 內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정부예산안 반영)
-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을 적정임금으로 설정하고, 월 정액 임금이 적정임금 미달 노동자에 대해 '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

③ 복지 3종·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

- 기간제 노동자 등의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 개선 논의('26.5.~)
 - * 단계적 개선 논의 결과를 추후 예산 편성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반영

■ 참고: 복지3종 관련 지침

- '2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정규직 전환 인력(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120%)을 편성할 수 있다.
- '26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 급식비 월 16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120%
- 중앙부처 동일·유사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간 수당 등 격차 분석·개선방안 마련('26.5.~)
 - * <예시> 직종별 월 평균 임금
 - ▶ 청소노동자: ○○부 222만원 vs △△부 237만원 vs ◇◇부 264만원
 - ▶ 사무(보조)원: ○○부 202만원 vs △△부 237만원 vs ◇◇부 241만원

2.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고용관행 근절 및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1. 공정한 고용 관행 확행 및 사전심사제 내실화

-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재확인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가이드라인 반영, '26.5.)
 -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반복 계약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으로 고용 안정 도모
-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 특성, 계약기간·인원 등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채용 사전심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비정규직 남용 방지(사전심사제 지침 개정, '26.5.)
 -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 시 각 기관 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전문성 활용 등)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도입
 - ** 現 내부위원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대부분 승인되어 실효성 지적
 - ↳ '24년 공공부문 864개 기관 중 850개소(98.4%) 도입, 총 25,483건 심사(승인율 94.6%)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유의 적정성·반복 채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 등 경영평가 반영('26.8.~)
- '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 대상 신속한 전환 지도('26.4. 기준 853개소 중 52개소)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 강화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등을 관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통한 공시체계 마련('26.7.~)
 - * ALIO(공공기관), 클린아이 공시 시스템(지방공기업)
 -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도 필수 공시대상에 포함 검토

3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

-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용 사전심사제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사용 (가이드라인 반영 및 관련 지침 개정, '26.5.)

* (예시) 특정 요일, 시간에만 수행하는 업무로 주 15시간 미만이 명확한 경우 등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등 추가 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비용절감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초단시간 노동법 적용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검토

3.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 체계적 관리·평가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실질적 이행 및 지속성 담보

1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임금 현황 파악을 위해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추진('27년)
 -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자 등 대상으로 고용 인원, 직종, 계약기간, 임금체계 등 조사·분석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 * 공무원위원회법 심의·조정사항(제3조제2항제7호): 연 1회 이상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확인 시 1년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지도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 신설·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반영 검토
 - 평가 이전이라도 자치단체 지원사업 등 심사에도 반영 검토('26.8.~)
- 전문가 중심 비정규직 고용 심사위원회를 구성(노동부)하여 비정규직 채용·운영 적정성, 사전심사제 내실화, 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 등 정성·정량 평가 지표 마련·평가('27년)
 - * 세부적인 평가 내용, 지표 등은 연구용역 결과(비정규직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연구<전북대, '26.3.-6.>) 등을 토대로 결정

3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운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운영('26.4.6. 개소)
 - *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공공부문 불합리한 고용관행 제보센터' 우선 개소(3.16.)
- 상담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 등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

4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

- 매년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실태점검 및 개선지도
 - * '26.3.11.~ 지방정부 30개소 대상 기획감독 착수, 하반기 확대 검토

IV. 향후 계획

- (신속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이후 대책 이행 필요 사항 신속 조치
 - (지침) 대책 내용은 정부 관련 지침* 등에 반영 추진 및 ^{가칭}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경영평가 등 평가 개선
 - * 예산안편성지침(기획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 등
 - (예산)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7년 예산안에 구체적 내용 확정·반영('26.9.) → 이후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
- (이행 점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TF*('25.12.~)」에서 대책 이행 상황 점검
 - * (구성)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향후 논의) 공무직위원회 발족(9월~) 이후 공무직위원회 중심으로 공공부문 처우개선 등 논의 지속 및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

1. 노동가치·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①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		
① 가칭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부, 관계부처	'26.5
② 공정수당 포함 정부예산 편성	기획처, 관계부처, 지자체	'26.9
③ 정부 관련 지침 반영 및 공정수당 시행	전체 공공부문	'27.1
②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추진		
① 적정임금 예산 반영	기획처, 관계부처, 지자체	'26.9
② 적정임금 도입 지원	노동부, 행안부, 재경부, 교육부, 관계부처	'26.4~
③ 정부 관련 지침 반영 및 적정임금 도입	전체 공공부문	'27.1
③ 복지 3중·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	공무직위원회·관계부처	'26.4~

2.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① 공정한 고용 관행 확행 및 사전심사제 내실화		
① 공정한 고용관행 확행	전체 공공부문	계속
① 사전심사제 지침 개정	노동부	26.5
② 사전심사제 운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	노동부, 재경부, 행안부	'26.8~
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 강화	재경부, 행안부	'26.7
③ 초단시간 남용 방지	노동부, 재경부, 행안부, 전체 공공부문	'26.5

3.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① 정기실태조사 실시	노동부, 공무직위원회, 관계부처	'27.3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①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 마련	노동부	'26.6
②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 등 개선	노동부, 재경부, 행안부	'26.8~
③ 비정규직 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노동부	'27.1
③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운영	노동부	'26.3
④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	노동부	'26.3~